##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최수진・김예지・김종양

조배숙・김선교・임이자

이종배 · 김미애 · 이인선

박준태 · 신성범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어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직무발 명보상금"이라 한다)
  -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의2. 직무발명보상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 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 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	<u>&lt;삭 제&gt;</u>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	
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	
<u>(이하 이 조, 제20조 및</u>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	
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	
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	
에서 "사용자등"이라 한	
다)으로부터 받는 보상	
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	

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 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제3

 2조제1항제4호에 따라받는 보상금

저. (생 략)

- 4. (생략)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다. (생 략)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

저.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퇴직 한 후에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 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 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 상금은 제외한다.

-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 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 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 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 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 한다.
  -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 자. (생 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저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4. (생 략)
-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 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 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한다)
- ② · ③ (생 략)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저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22. (생 략)
  -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23. ~ 27. (생략)
  - ② ~ ⑤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1. ~ 4.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①.	$\bigcirc$	(혅행과	71.0
$(Z) \bullet$	(3)	(연앵과	(4)

세21조(기타소득) ①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직무발명보상금

2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